

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환급 업무처리 안내

1. 배경

-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*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

* (관련근거)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①항1호의 다목

-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지 않고 수출기업 등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채택('24.1.26.)
-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는 '환급대상 포장용품'으로 회신('24.2.23.)

<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>

구분	생산 및 포장 형태		환급대상 원재료		
기존	(생산자) 제조·가공·포장	(수출자) 수출	(생산자) 결합·소모물품·포장용품		
확대	(생산자) 제조·가공	(수출자등) 포장+수출	(생산자) 결합·소모물품	+	(수출자등) 포장용품

2. 인정기준

- (적용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제1호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에 해당
 - ① (포장유형)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제3자가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
 - ② (포장용품)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며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것
 - ③ (국내거래증명 등) 포장용품의 국내거래 시 제증명 및 수출이행 기간 등 기타 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(적용시기) 2024. 2. 23. 이후 수출물품(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물품)의 환급등* 신청부터 적용

* (관련규정) 「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」 제2조(정의) 제5호

3. 환급등 신청방법

- 환급등 신청인은 환급등 신청 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환급등 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서·기납증(수입원재료, 병)에 포장용품의 내역, 사용량 등을 기재하여 환급등을 신청

<포장용품 환급신청 방법>

- ① (포장용품 소요량 계산) 수출물품의 포장을 수행한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고 근거 서류*를 보관하며, 환급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요량 근거 서류를 환급신청인에게 제공

*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것임을 증명(소요량계산서, 포장명세서 등)

- ② (소요량산정방법 신고) 환급등 신청인은 「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 등에 따라 환급등 신청 전에 위 포장용품 소요량 산정을 근거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산정방법*을 환급등 신청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**를 작성하여 환급등 신청 세관장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신고

* 수출물품의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자의 제증명(기납증 등)에 반영되므로, 환급등 신청인의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 및 신고 추가적으로 필요

** 「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」별지 제1호서식

- ③ (환급등 신청) 환급등 신청인은 환급대상 포장용품을 환급신청서·기납증(수입원재료, 병)에 기재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환급등 신청

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방법	환급구분	소요량구분	환급 수출형태*	비고
환급신청서(수입원재료, 병)에 포장용품 기재	[3] 개별	(빈칸)	(예) 25, 26, 28, 33, 05 등	을지: 수출물품 기재
기납증(수입원재료, 병)에 포장용품 기재	[3] 개별	[01]~[06] 중 선택		을지: 수출물품 기재

*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 부호와 사용 가능

4. 시행일

- 2024. 2. 29.부터 개정 환급고시 시행일까지